
제도개선을 통한 대한예방의학회의 발전방향

- 회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

문 옥 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차 레●●

<목차>

I. 머리말	1
II. 대한 예방의학회칙의 어제와 오늘	1
III. 제 9차 회칙개정 추진 배경	10
IV. 설문조사 및 대안의 비교 검토	12
1. 설문조사 결과	12
2. 대안의 비교	13
V. 개정(안)의 마련	15
VI. 기타 발전방안	
-제도위원회 내규(안)의 마련	22
VII. 맺는말	23
▶ 참고문헌	23
▶ 부록	24

<표차례>

표 1. 대한예방의학회 회칙의 발전과정	12
표 2. 설문응답 결과	12
표 3.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 및 명칭을 기준으로 한 비교	13
표 4. 대한예방의학회 회칙개정(안) 대조표	17
표 5. 제도위원회 내규(안)	22

I. 머리말

모든 조직이나 모임의 시작은 정관이나 회칙의 제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끝도 여기에 규정되기 마련이다. 회칙이란 한 나라의 헌법처럼 모든 조직의 행동강령인 것이다. 창립 50주년을 지낸 대한 예방의학회의 회칙 역시 우리 학회의 헌법인 셈이므로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학회의 앞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된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국내외의 주위 환경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가고 있는데 예방의학계 주변상황 역시 그러하다. 원래 20세기의 중반에 창립된 본 학회가 그 설립 목적인 예방의학의 학문적 발달과 국민보건의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얼마나 도모했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되겠으나, 그 동안의 회세(會勢)의 성장만 보더라도 우리 학회의 대 사회적 기여가 계속되어 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원들의 요구와 시대상황을 반영하느라고 회칙이 수차 개정되어 왔는데, 지금과 같은 격동기를 이겨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자면 또 한 번의 회칙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거 수년간 본 회 회칙의 수정요구가 가끔씩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는 중간 과정이 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현 회칙의 절차로는 이러한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을 뿐이다¹⁾. 하지만 회칙개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같은 관례적인 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어서 한 번쯤 여론을 걸러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견해이다²⁾. 이러한 취지 아래 제도위원회가 현안에 대해 본 회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회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실시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II. 대한 예방의학회칙의 어제와 오늘

광복과 더불어 암울하였던 일제 36년이 종료되자, 조선의학협회가 발족하였고 예방의학 분야에서도 1947. 5. 10에 조선보건학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회칙원안은 필자가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³⁾. 본 학회의 회칙은 제정 이후 8회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 1)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 연후에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 1998년 12월 3일 개최된 본 회 제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임.
- 3) 학회창립 당시의 회칙을 발굴해 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창립총회 당시의 회칙은 1960년에 제 1차로 개정되기 15년 전이므로 그 내용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표 1. 대한예방의학회 회칙의 발전과정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대한예방의학회라 칭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칭함	(좌동)
제 2조	본회는 예방의학의 학문발전, 국민보건향상,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좌동)	(좌동)	회원상호간의 협조와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목적으 로 함	(좌동)
제 3조	본회의 본부는 이시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좌동)	(좌동)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 제 4조 본회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조	제 4조 본회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조	제 4조 (좌동)	제 4조 ...있음	제 4조 (좌동)
제2장 회원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회취지에 비추어 찬동하는 자와 동협회의 비회원으로서 대학의 교수직 및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의학을 전공하는 자로 한다.	...대한의학 협회...	(좌동)	(좌동)	본회의 회원은 <u>정회원과 준회원</u> 으로 한다. 정회원은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예방의학분야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준회원은 <u>상기협회의 비회원으로 예방의학분야에</u>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예방의학분야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좌동)	제 5조 (좌동)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예방의학분야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함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 5조	본회에 임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임회비 및 회비를 임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제 6조 본회의 임회는 임회원서에 임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 6조 (좌동)	제 6조 (좌동)	제 6조 (좌동)	제 6조 (좌동)
제 6조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좌동)	(좌동)	-	-	-	-	-
제3장 임원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차기이사장 1명 3. 감사 2명 4. 고문 약간명	... 1.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2. (좌동) 3. (좌동) 4. (좌동)	1. (좌동) 2. ...이사 40명 (상임이사포함) 내외 3. (좌동) 4. 고문약간명 (취임회장 포함)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이사 40명 내외, 감사 2명, 고문 약간명 단, 차기회장은 부회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문은 본회의 비회원으로서는 본학회에 공헌한 자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이사 30명 내외 (고문관련사항 없음)	(좌동)	이사 20명 내외	본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기 임원을 둬.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이사 약간명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p>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회의의 장이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를 총괄하고 사회의 장이 된다. 3.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시 이사장직을 승계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주요 임무에 참석하여야 할 파악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6.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서조항 없음 2. 차기회장의 임기만료시 회장직을 승계하는 회장이 참가하여 주요 임무에 참석하여야 할 파악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3.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차기 이사장을 파악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회(좌의 4호와 동일) 6. 감사(좌의 5호와 동일) 7. 고문(좌의 6호와 동일) 	(좌동)	<p>본회의 회장, 차기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p>	(좌동)	(좌동)	(좌동)	<p>본회의 회장, 차기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p>	(좌동)
제 8조								
제 9조 (계속)	<p>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제청하고 선출한다. 2. 차기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참석회원 파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기회장과 감사... 선출한다. 2. 차기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참석회원 파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 9조	3.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3. (좌동) 유관기관의 대표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본학회의 발전에 공 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 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 한다.	3. (좌동) 4. (좌동)	3. (좌동) 4. (좌동)	-	-	-	-	-
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중임할 수 없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단, 이사는 매 2년 마다 최고 3분의 1 범위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좌동)	(좌동)	제 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단, 중임도 무방하 다.	제 12조 (좌동)	제 12조 임원의 임 임원의 임기는 1년 기는 1년 으로 함. 단, 중임도 으로 한다. 무방함 단, 중임도 무방하다.	제 10조 (좌동)	제 10조 (좌동)
제 11조	본회의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를 둔다. 각 부장은 의 사장이 임명한다. 1. 총무부(기획, 사무 및 회계등) 2. 학술부(학회개최 및 기타 학 술에 관한 사항 등) 3. 조직부(지부설치 및 연락등)	(좌동)	제 9조 ...회장이... (좌동)	제 9조 총무부(기획, 사무 및 회계등) 학술부(학회개최, 학술잡지 발간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지부부(지부설치 및 연락 등)	(좌동)	(좌동)	제 9조 ...하기와 같은회장이 임명한다. 각 부장은 총무부(사무, 회계, 이사에서 기회) 학술부(학회개최, 잡 지발간) 지부부(지부설치 연락에 관한 건)	제 9조 ... 각 부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함. (좌동)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4장 총회								
제 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u>환술대회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소집한다.</u>	(좌동)	(좌동)	제 13조 <u>정기총회는 연 1회 이를 소집하여 연간사업을 토의하고 회장의 임시총회를 발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u>	제 13조 (좌동)	제 13조 (좌동)	제 11조 ...발표화. ...회장이 <u>찬</u> 를 소집한다.	제 11조 (좌동)
제 13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u>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u>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사업의 계획심의 2. 예산 및 결산 3. <u>회장, 차기이사장, 감사의 선출</u> 4. <u>고문추대의 의견</u> 5. <u>회칙의 개정</u> 6. <u>기타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인준</u>	(좌동)	(좌동)	-	-	-	-	-
제5장 이사회								
제 14조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u>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u>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3.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간사 및 기료 관리 위원장의 <u>선출</u>	제 14조 이사회는 수시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조 (좌동)	제 14조 (좌동)	제 12조 ...요구가 <u>유할 시 회장의 찬</u> 를 소집한다.	제 12조 (좌동)
제 15조								
제 16조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 17조	<p>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주요업무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및 상벌 3.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5.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집행 6. 수련 및 고시에 관한 사항 7. 차기이사장의 제청 8. 고문의 제청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각 위원회의 장 및 동위원의 인준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좌동)	-	-	-	-	-
제 18조	<p>이사장은 이사회에 각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회제도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의학과 교육위원회 4.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5. 전문의 고시위원회 6. 회지편집위원회 7. 재정위원회 	<p>...상임이사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회제도(회칙 등) 2. 학술 3. 의학과 교육 4. 전공의 수련교육 5. 전문의 고시 6. 회지편집 	제 10조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조 제 11조 지방에 지부를 두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좌동)	제 10조 (좌동)	제 11조 (좌동)	제 11조 (좌동)
제 19조	<p>운영위원회는 전항 각 위원회의 임무를 분담하며 각 위원회에 약간명의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p>	(좌동)	(좌동)	-	-	-	-	-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 20조	<p>운영위원회는 7개 위원회의 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조직부장 및 무임소 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장은 이사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장은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좌동)	<p>상임이사회는 총무이사, 학술이사, 조직이사, 6개 위원회의 장 및 무임소 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의 장은 이사장이 되고, 상임위원회의 장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재직 상임이사 ... 출석 상임이사...</p>	-	-	-	-	-
제 21조	<p>본회의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임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회비, 연회비, 평생회비의 과실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좌동)	(좌동)	제 15조 본회의 재정은 임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로 충당하며,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된다.	(좌동)	(좌동)	제 13조 입회금 3,000원, 연회비 3,000원으로 금 찬조금으로 함. 단 평생회비 30,000원 합. 임회금 천원으로 한다.	제 13조 본회의 재정은 임회금 회비 3,000원으로 금 찬조금으로 함. 임회금 천원, 회비 연 5백원으로 함
제 22조	<p>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p>	정기총회 개최 의결로 부터 차기총회 개최일	(좌동)	-	-	-	-	-
제 23조	<p>본회의 재산중 기금을 제외한 현금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사장이 보관한다.</p>	(좌동)	(좌동)	-	-	-	-	-

	1994. 10. 27 (제8차)	1993. 10. 28 (제 7차)	1992. 10. 30 (제 6차)	1988. 11. 5 (제 5차)	1985. 11. 3 (제 4차)	1980. 10 (제 3차)	1978. 1 (제 2차)	1962. 10. 26 (제 1차)
제 24조	본회의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기금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좌동)	본회의 기금관리와 운용을 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로서 대한예방의학회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고,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회기금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	-	-	-
부칙	1. 본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2. 본회칙은 총회의 결의 후 대한의학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초대이사는 이사회 의 제청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좌동)	(좌동)	제 16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칙 제 17조 본회칙은 총회의 결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19조 본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8. 11. 5)	제 16조 (좌동)	제 16조 (좌동)	제 14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 및 잡지에 차를 발표함	제 15조 ...결의로써 차를 변경할 수 있음 제 16조 ...총칙은 일반관례에 준함.

내용은 표 1과 같다.

창립 당시의 본 회칙은 제정 후 15년간 그리고 1차 개정 후에도 16년간 수정됨이 없이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의 3차 개정 이후에는 19년 동안에 5회나 개정되었다. 개정의 빈도를 더해갈수록 회칙은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제 2차 개정(1978)에서는 자구수정을 제외할 때 4개 조항이 수정되었고, 그중 하나는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제 3차 개정(1980)에서는 3개 조항이 그리고 제 4차 개정(1985)에서는 1개 조항이 소폭 수정 또는 보완되었다. 그러나 제 5차 개정(1988)은 소폭 수정이기는 하나 학회의 목적과 회원자격에 손질을 가하고 있다. 예방의학의 학문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외에도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것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 실시해온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차별을 철폐하여 회원가입의 문호를 다시 개방하였다.

제 6차 개정(1992)에서는 증가하는 학회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회장 중심체계에서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여 회장과 이사장의 이원적 기능분담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사를 4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이 이후로는 학회가 이사장 중심체제로 개편되어 6개 위원회의 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회가 실행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기금관리 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차기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제 7차 개정(1993) 및 제 8차 개정(1994)은 이사장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폭의 보완적 개정이었다. 예를 들면 임원의 임무와 선출방법 그리고 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상임이사회를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바꾸었다.

III. 제 9차 회칙개정의 추진 배경

지난 12월 3일 본 학회 제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들 간에 회칙개정(안)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이 모임은 본 회 홍재웅 감사가 1998. 10. 29 제안한 회칙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본 제안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분담을 다시 정의하자는 제안이 과거 회원들간에 수년간 계속되어 왔었는데, 개정안이 문서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인 줄 안다.

전임 제도분과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준연 현 이사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처음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일이 있었으나 공론화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이번에 홍재웅 감사가

4) 그 동안의 구두제안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모두 소수의견으로 취급, 정리되었다.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⁵⁾.

그 첫째는 현행 회칙에 따르면 회장과 이사장의 업무 분장에서 회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를 대표하는 기능밖에 없어서 그 존재 이유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둘은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이에 비하여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갖는 기능으로 분담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그 셋은 조문의 구성이나 사용된 용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다 명료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 번째 제안 이유인 용어의 통일이나 조문의 구성 및 순서 등을 정돈해야 할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므로 개정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지는 상호관련성이 깊어서 회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할 줄로 안다. 만약 원로급 인사가 회장직의 명예에만 만족한다면 현행 회칙은 크게 수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로급 인사(지금의 회장)가 지금보다 더 실권을 가진 채 학회에 좀 더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능을 더욱 부여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큰 폭의 회칙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현행 회칙은 회장직을 명예직으로 생각해서 총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대표로서의 기능만 부여하고, 실질적인 회무는 이사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의 본 제안은 이사장과 회장의 기존 직함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이사장이란 이사회의 장이므로 원로급인사가 의결기능만 부여받고 모든 집행기능은 회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업무분장을 완전히 다시 하자는 주장이 된다.

만약 임원들 직함의 명칭을 이사장은 이사회의 장으로만 두고, 모든 기능을 회장에게 주는 안이라면 현행 규칙에서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만 맞바꾸면 된다. 이 경우가 가장 간단한 개정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로급이 맡아야 할 이사장의 기능이 미약하기는 지금의 회장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명칭만 바꾸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사장 쪽으로 쏠려있는 기능 중 일부를 회장 쪽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홍재웅 감사는 총회의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원로급 이사장에게로 이전하는 대신 집행권을 회장에게 환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사장은 이사회와 총회를 주재해서 의결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회장은 의결된 사항을 집행만 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결국 의결권을 원로인사에게, 집행권을 보다 젊은 중견인사에게 주자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전권을 행사하는 중견인사(현재의 이사장)로부터 의결권을 빼앗아 버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책임과 권한만을 직함 변경된 회장에게 부여하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이다.

5) 부록참조

IV. 설문조사 및 대안의 비교 검토

1. 설문조사 결과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하다⁶⁾.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설문의 배경>

1. 현행회칙에 회장은 총회를 주재하는 것 외에 실제적인 기능이 미미함. 그러므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임무를 총괄, 집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기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 한편으로 이사장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회장직은 명예직으로서 실질적인 학회운영은 이사장이 맡는 현행의 운영형태가 대부분의 의사협회 산하 학회의 현실이기도 함.

따라서 본 회에서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학회 회칙 개정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1)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타의견: _____

표 2. 설문응답 결과

구분	빈도	이사명
1) 현행유지	25 (67.6%)	김기순, 김해준, 염용태, 김병익, 김용익, 신해림, 서석권, 정갑열, 최진수, 김준연, 배기택, 정치경, 전기홍, 김돈균, 정종학, 문옥륜, 유승흠, 유동준, 이병국, 맹광호, 한달선, 박정일, 오희철, 김한중, 최보을
2) 재조정요	9 (24.3%)	김두희, 이수일, 전진호, 조병만, 홍재웅, 김경순, 천병렬, 박종구, 강복수
3) 기타	3 (8.1%)	고대하, 이재연, 김영배
계	37 (100.0%)	

*기타의 내용은 다수의견에 따르겠다는 취지였음. **49명의 이사 중 무응답자가 12명이었음.

6) 설문이 긴 것이 응답하기를 꺼리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도 있겠기에, 본 조사에서는 가장 짧은 한 문장으로 된 설문을 채택하였다.

전체의 2/3가 현행체계를 유지했으면 했고, 1/4이 재조정을 희망했으며, 1/12은 다수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표 2참조). 따라서 응답자의 3/4(75.7%)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대안의 비교

이사장과 회장직함의 명칭에 대한 것과 두 임원간의 역할분담을 고려할 때 다음의 네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역할과 직함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의 2×2로 네가지가 된다(표 3참조). 그러나 주요권한으로는 본회의 대표권, 의결권과 집행권의 세가지가 되므로 세부분류가 좀더 복잡해진다.

첫째, 둘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I) 즉,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총회만 주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회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둘째, 직함은 그대로 두되 역할만 변경하는 경우(II) 즉,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면서, 의결권만을 갖거나(IIa), 업무의 집행권만을 갖거나(IIb, 홍재웅 감사의 제안) 또는 둘다 가지는 경우(IIc)가 된다. (IIa)는 의결권이 원칙적으로 이사회 업무소관이므로 대안으로서의 취지와 잘 맞지 않는다. (IIb)는 바로 홍재웅 감사의 제안이 된다. (IIc)는 이사장의 역할이 극소화되기 때문에 역할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제안의 취지와 잘 맞지 않는다.

셋째, 직함을 변경하되, 역할을 그대로 두는 경우(III) 즉 이사장이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회장이 본회의 대표권마저 상실하고 총회를 주재할 기능만 남게 된다. 이때는 회장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욱 미약해져서 대안으로 보기가 어렵다.

넷째, 둘 다 변경하는 경우(IV) 이사장이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주재하고, 회장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이 경우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경우로서, 이사장의 권한이 미미해진다. 그러므로 회칙개정 제안 사유와 동일한 사태가 야기된다.

결국, (III)와 (IV)는 제안서를 낸 바로 그 사유(회장과 이사장간의 적절한 역할분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I)과 (II)을 비교하되, 그 중에서도 (I)과 (IIb)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표 3.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 및 직함을 기준으로 한 비교

역할	직 함	
	현행유지	변경요망
현행유지	(I) 회칙 수정 필요없음	(III) 이사장이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짐
변경요망	(IIa)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면서 의결권을 가짐	(IV) 이사장이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함
	(IIb)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면서 집행권을 가짐	
	(IIc)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면서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짐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풀어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누가 본 회를 대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가? 회장이 해야 하나? 이사장이 해야 하나?

둘째, 원로급 인사와 중견급 인사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 업무분담이 자연스러운가?

셋째, 원로급 인사와 중견급 인사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업무분담이 회무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회장 또는 이사장의 명칭에 무관하게 원로급 인사가 회를 대표하는 것이 중견인사가 대표하는 것보다 모양이 낫다는 생각이다. 즉 종래 원로가 본 회를 대표해왔으니,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이다. 이는 우리 학회의 이사장은 대체로 규모가 큰 교실 출신의 중견인사가 과거 7년 동안 이를 맡아서 수행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사장 중심의 의결권 행사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학회의 경우 이사장과 회장에 대한 이미지가 현 체제대로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나 아닐는지? 만약 이를 바꾼다면 회원들에게 상당 기간 두 직에 대한 역할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회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소위 이사장과 회장간에 어느 정도의 업무분담이어야 상호관계가 자연스러울 것인가? 이는 학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고, 이사장과 회장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좌우될 소지가 많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강한 원로급 인사가 현행 회칙 하에서 회장이 된다면 현 회장직의 무력함에 불만스러워할 수 있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징적인 대표로서의 회장직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만약 양자간에 업무보고

체계나 협력통로가 잘 수립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연유할 수 있는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선배를 존경하는 동양적 가치관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갈등이 최소화되어 자연스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행 회칙은 회장이 되기만 하면,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현 회장이 타 이사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대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질문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조직이 단일화될수록 추진력이 커지는 반면, 이원화 될수록 상호조정애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긴장관계가 조성될 소지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권력지향적 조직일수록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회장과 이사장의 근무처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한 소지 역시 증가할 수 있을 터이다. 이는 학회가 덜 권력지향적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공간적 위치가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상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회장과 이사장의 상호관계가 원만하여 역할 분담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팽팽한 긴장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학회조직의 성격이 권력지향성이 적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원적 상호견제 구조를 피하고 상징적 대표로서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중견인사(현 이사장)에게 권한을 완전히 부여하는 대신 그만큼 책임을 더욱 크게 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동안 현재의 강력한 이사장 체제가 회무수행에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도 크다. 어차피 현 이사장이 회무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데, 그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을 조금이라도 앗아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V. 개정(안)의 마련

제도분과위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침 아래 회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이사 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어서 이를 개정작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한다.

셋째, 홍재웅 감사가 제기한 개정(안)의 장점을 신규 회칙개정에 충분히 반영한다.

7) 이러한 소감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필자의 느낌을 덧붙인 것이다.

넷째, 형식면에서도 간결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체제를 일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침아래 제도위원회가 마련한 회칙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제안 사유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과 차기회장등 본회 임원의 임무와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 회칙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회장의 권한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 용어의 사용과 조문의 구성을 보다 일관성있게 서술함으로써 회칙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함임.

□ 주요골자

- 각 조문에 제목을 삽입하고, 기술의 순서를 ‘조’와 ‘항’과 ‘호’로 구분함.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음(제 3조 신설).
- 이사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음(제 8조 2호).
-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했음(제 10조 1항).
- 각 부에는 부장과 간사를 두며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함(제 12조).
- 필요시 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음(제 17조).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타 특별위원회를 첨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다 신축성을 부여하였음(제 20조).
- 회칙개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했음(제 25조).
-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부칙에 수정을 가했음(부칙).

표 4. 대한예방의학회 회칙개정(안) 대조표

현 회칙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1장 총칙</p> <p>제 1조: 본회는 대한예방의학회라 칭한다.</p> <p>제 2조: 본회는 예방의학의 학문발전, 국민보건향상,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3조: 본회의 본부는 이사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에 자부를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장 총칙</p> <p>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방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라 칭한다.</p> <p>제 2조(목적)(좌동)</p> <p>제 3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학술강연회 등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발간 3. 예방의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4.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질적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교류 및 향상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p>제 4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이사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에 자화를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첨가</p> <p style="text-align: center;">-</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장 회원</p> <p>제 4조: 본회의 회원은 대한의학협회 회원으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와 동협회의 비회원으로서 대학의 교수직 및 연구소의 연구원중에서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을 전공하는 자로 한다.</p> <p>제 5조: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p> <p>제 6조: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장 회원</p> <p>제 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와 동협회의 비회원으로서 대학의 교수직 및 연구소의 연구원중에서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을 전공하는 자로 한다.</p> <p>제 6조(입회절차)(좌동)</p> <p>제 7조(권리)(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p> <p>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제 3장 임원

제 7조: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차기 이사장 1명 및 이사 40명내외
3. 감사 2명
4. 고문 약간명

제 8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회의의장이 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 만료시 이사장직을 승계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주요 임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6.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제청하고 선출한다.
2. 차기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유관기관의 대표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본회확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는 매 2년마다 최고 3분의 1범위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차기 이사장 1명 및 이사 50명내외
3. 감사 2명
4. 고문 약간명

제 9조(임원의 직무)(좌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제 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차기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유관기관의 대표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 ④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좌동)

- ①
- ②
- ③

수정

수정

-

수정

-

제 11조: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를 둔다. ~~각 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1. 총무부(기획, 서무 및 회계 등)
2. 학술부(학회개최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등)
3. ~~조직부(지부설치 및 연락 등)~~

제 4장 총회

제 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4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회장, 차기이사장, 감사의 선출
4. ~~고문의 추대의 의결~~
5. 회칙의 개정
6.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인준~~

제 5장 이사회

제 15조: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6조: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본회의 주요업무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및 상벌~~
3.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집행~~
6. ~~수련 및 고시에 관한 사항~~
7. ~~차기이사장의 제청~~
8. ~~고문의 제청~~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12조(운영부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를 둔다. ~~각 부에는 부장과 간사를 두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총무부(기획, 서무 및 회계)
2. 학술부(학회개최 및 기타학술에 관한 사항 등)
3. ~~섭외부(섭외 및 지회 활동지원)~~

제4장 총회

제 13조(총회의 소집)(좌동)

제 14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회장, 차기이사장, 감사의 선출
4. ~~고문의 추대~~
5. 회칙의 개정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16조(이사회 구성)(좌동)

제 17조(이사회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 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주요 업무 및 정책~~
2. ~~회원의 가입 및 상벌~~
3.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6. ~~전공의 수련 및 고시에 관한 사항~~
7. ~~차기이사장, 회장과 고문의 제청~~
8. ~~특별위원회의 설치~~
9. ~~기타 회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수정

-

-

수정

수정

수정

-

수정 및 첨가

수정 및 첨가

제 18조: 이사장은 이사회에 각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1. 학회 제도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의학과 교육위원회
4.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5. 전문의 고시위원회
6. 회지 편집위원회
7. 재정위원회

제 19조: 운영위원회는 전항 각 위원회의 임무를 분담하며 각 위원 외에 약간명과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0조: 운영위원회는 7개 위원회의 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조직부장 및 무임소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장은 이사장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정

제 21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1.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의 과실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 2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전년 12월 1일로부터 당해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23조: 본회의 재산 중 기금을 제외한 현금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사장이 보관한다.

제 24조: 본회의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기금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19조(위원회):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제도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의학과 교육위원회
4.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5. 전문의 고시위원회
6. 회지 편집위원회
7. 재정위원회
8. 기타 특별위원회

제 2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항 제 19조의 위원회의 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삼위부장 및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장은 이사장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정

제 21조(경비조달)(좌동)

제 22조(회계년도)(좌동)

제 23조(현금관리): 본회의 재산 중 기금을 제외한 현금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 24조(기금관리): 본회의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수정
(제19조와
통합)

삭제

수정

-

-

-

수정

수정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 7장 회칙개정</p> <p>제 25조(회칙의 개정): 회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p> <p>① 본 회칙의 개정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p> <p>② 이사장은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기 2개월 이상 전에 이사들에게 공지한다.</p> <p>③ 이사회의 심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회칙개정안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정기총회에 회부하여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본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이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p> <p>2.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 후 대한의학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p> <p>3.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의 제청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1994. 10. 27)</p> <p>1. (좌동)</p> <p>2. (좌동)</p> <p>3. (좌동)</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부 칙(1998. 12. 30)</p> <p>①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의 시행일로부터 전의 부칙(1994. 10. 27)의 1, 2, 3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p>	<p>첨가</p>

VI. 기타 발전방안

-제도 위원회 내규(안)의 마련

개정회칙에 따르면, 본회는 7개의 상설위원회와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자면 이의 운영을 규정하는 내규가 필요할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기록이 보존·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도위원회 운영내규(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표 5참조).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이 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5. 대한예방의학회 제도위원회 내규(안)

순서(항목)	내용
제 1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대한예방의학회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 2 조 (소속)	본 위원회는 대한예방의학회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제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회관련 제 문서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위원회의 관련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회의 및 회의록)	본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록 사본을 학회에 제출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규칙에 준한다.
3. 본 내규는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VII. 맺는말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본회 회칙을 최종 손질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본 회칙이 학회의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장차 학회활동이 더욱 발전해 갈수록 업무량은 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서 본 본회 이사진들의 다수의견은 현행체계를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양자간에 불필요한 갈등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전권을 이사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장은 학회의 상징적 존재로서 학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하는 역할과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회장이 이사자격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더욱 토론을 요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대한 예방의학회지,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2.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 85년사, 1908-1993
3. 홍재웅, 대한예방의학회 회칙 개정안, 1998. 10. 29
4. 서울특별시 의사회, 80년사, 1915-1995

▶ 부록 ◀

(대한예방의학회 회칙 개정안)

1998. 10. 29

제안발의자: 감사 홍재웅

대한예방의학회 회칙 개정안

□ 제안 이유

- 현행 회칙은 회장과 이사장의 업무분장이 분명치 않고, 회장은 총회를 주재하는 것 외에는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그 존재이유가 애매하고
- 조문의 구성이나 사용된 용어가 일관성이 없으며 그 순서와 논리성에도 결함이 많아 혼란스러워 이해하기 곤란하여 혼동을 초래하므로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의 집행책임을 갖는 기능으로 명확히 하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기능으로 분담케 하여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시켜 각각의 견제기능을 살리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 아울러 회칙의 주, 항, 호를 명료하게 하고 용어도 통일하였음.

□ 주요 골자

- 각 조에 제목을 삽입하고 체계를 조, 항, 호로 구분함.
- 이사장의 기능을 그 명칭에 맞게 의결기구인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의 지명권도 갖도록 하였음(제 8조 제 3항, 제 9조 제 2항, 제 11조 및 제 12조)
- 회장은 명실공히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의 집행기능과 긴급사항에 대해서 관장하도록 그 산하에 총무부, 학술부, 섭외부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였음(제 8조 제 1항,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및 제 23조).
- 위원회 중 상설위원회 이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18조 제 8호 및 제 19조 제 1항)
- 조문의 장을 조절하여 제 1장 총칙, 제 2장 회원, 제 3장 임원, 제 4장 의결기구인 총회와 이사회, 제 5장 집행부, 제 6장 재정과 회칙개정으로 분류
- 운영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 처리를 위해 이사와 집행부의 혼성위원회로 특화(제 20조)
- 총회의 선출을 요하는 차기회장, 이사장, 감사후보 및 고문의 제청권을 별도 전형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명문화(제 16조)
-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회칙개정규정을 본문 제 25조에 신설하고 그 의결 정족수도 현실성 있게 개정(제 25조)